

정 관

사단법인 한국FPSB

정 관

2004. 1. 6. 제정

2006. 5. 29. 개정

2014. 8. 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 에프피에스비”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of Korea” 또는 “FPSB Korea”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과 임무)

- 1) 이 법인은 국제 기준의 역량과 윤리성을 갖춘 재무설계사를 비롯한 금융 전문자격자를 양성, 인증하고, 산업체의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으로서 개인종합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의 국민적 보급과 생활화를 실현시켜 가계 경제의 건전한 운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이 법인은 전항의 목적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개인종합재무설계 및 금융전문자격과 관련된 전문직 업무수행 기준을 제정, 개선, 보급하고, 산업체의 인재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대국민 재무상담과 재무교육 등의 계몽 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제 3 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의 자격인증기준의 제정, 개선 및 시행에 관한 사업
2.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의 자격인증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업
3.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의 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하는 선별된 전문가에 대한 자격인증의 승인에 관한 사업
4.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의 전문가 양성 및 자격인증자의 전문성 유지와 증진을 위한 교과과정별 커리큘럼의 제정, 개선, 시행 및 교재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업
5. 개인종합재무설계관련 등록상표 등 각종 표장의 가치보존 및 법적 지위보존에 관한 사업

6.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의 소비자 보호와 이익증진을 위한 자격인증자의 직업윤리 규범의 제정, 개선 및 시행에 관한 사업
7.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격인증자의 전문직 업무수행과 관련된 제반 행위를 규율하는 징계의 조사와 절차 등의 제정, 개선 및 시행에 관한 사업
8.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의 자격인증자에 대한 소비자와 감독당국의 신뢰증진을 위하여 자격인증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자격인증갱신기준의 제정, 개선 및 시행에 관한 사업
9.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개인종합재무설계부문 자격인증자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홍보를 위한 사업
10.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의 증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문지식과 윤리에 대한 기준 등 자격인증요건 개선을 위한 국제FP표준위원회(FPSB)와 국제FPSB평의회(FPSB Council) 등 개인종합재무설계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및 지원을 위한 사업
11.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의 국제표준의 제정, 개선, 시행을 위하여 국제표준제정기구(ISO) 등 관련기구와의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사업
12.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출판사업
13.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에 관한 국내외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포럼 등의 개최 및 관련사업
14.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15. 금융전문자격의 교육, 시험, 인증 등에 관한 사업
16. 산업체의 인재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업
17. 교육시설과 사무실 등 부동산의 임대업에 관한 사업
18.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승인하는 사업

제 4 조 (사무소의 소재지 등)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부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장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사원인 정회원과 인증회원, 법인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이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 : 개인재무설계분야의 전문가 또는 자격제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2. 인증회원 : 이 법인이 인증 또는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
3. 법인회원 : 이 법인의 취지와 활동에 공감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일반회원 : 교과과정용 교재개발에 참여하거나 또는 과정교육 강사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
5. 명예회원 : 회장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가입)

- 1) 이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인의 설립을 발기한 발기인의 경우 이외에는 다른 정회원 3인 이상의 정회원가입추천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2) 정회원의 가입은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회원가입신청에 대한 자격심사를 위임할 수 있다.
- 3) 인증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인증자격 별로 구분하며, 인증회원의 가입은 자격인증위원회 또는 인증분과위원회의 해당자격의 인증승인으로 각각 회원가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4) 법인회원의 가입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일반회원의 가입은 자격인증본부의 추천과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명예회원의 가입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 회원가입이 승인된 자는 입회비 및 회비 등을 납부한 날로부터 해당유효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 7 조 (입회비 및 회비 등)

입회비 및 회비와 자격인증비(라이선스비)의 구분, 부과, 징수 및 이에 관련된 제반 필요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이 법인의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회원 이외의 회원은 의결권은 없으나 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으며 의장이 승인하는 경우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2)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회비 등 이사회가 정하는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3) 모든 회원은 법인의 정관, 규정 및 방침과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원자격의 소멸)

- 1)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회원이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통보하고 2주가 경과한 때. 다만,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일정기간 탈퇴를 유보할 수 있다.
 2. 사망, 파산선고가 확정되었거나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개시심판을 받았을 때
 3. 해산 또는 합병으로 법인 또는 단체가 소멸된 때
 4.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이 확정된 때
 5. 윤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격인증이나 지정이 취소된 때
- 2) 회원의 자격이 소멸되는 경우 회원은 이 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입회비 및 회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0 조 (회원에 대한 제재)

- 1) 회원이 법인의 정관, 규정 또는 방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정회원과 명예회원의 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은 이사회의 승인결의로 확정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3) 경고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은 동 제재기간 중에도 법인에 대한 회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총 회

제 11 조 (총회)

-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후에, 임시총회는 수시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2.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소집의 목적과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 청구하는 경우
 3. 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2 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방법을 전화 등으로 달리할 수 있다.
- 2) 정회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서는 이 법인의 인터넷사이트상의 총회소집공고로서 총회소집의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제 13 조 (총회의 의결사항)

-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3.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5.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 또는 감사가 부의한 사항
- 2)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총회의 의결방법)

- 1) 정회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 2)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3) 총회는 이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총회의 의결권은 대리인,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사할 수 있다.
- 5) 정회원이 아닌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특별히 허가하는 경우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15 조 (정회원의 의결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인 정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 법인과 정회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정회원의 이해와 이 법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제 16 조 (의사록의 작성)

- 1) 총회의 의사에 관한 경과와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서명 확인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의사록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 17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 18 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일 3일전에 목적사항, 회의 일시, 회의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방법을 전화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제 19 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업무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3.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으로 정한 사항
5. 총회에 상정할 의안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 20 조 (의결방법)

- 1)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 21 조 (의결권)

- 1) 모든 이사는 이사회에서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 2)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결의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2 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에는 그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서명한 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23 조 (위원회 등)

-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윤리위원회
 2. 교육연수위원회
 3. 자격인증위원회
 4. 기획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2)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 5 장 임 원

제 24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1) 이 법인은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를 둔다.
- 2) 이 법인은 2인 이하의 감사를 둔다.
- 3)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정회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4) 총회는 이사선임 시 원칙적으로 소비자단체, 개인종합재무설계사(CFP)자격인증자, 관련전문직업계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회구성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제 25 조 (임원의 임기)

- 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시에 한하여 총 임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임원 별로 임기를 1년, 2년, 3년으로 정하여 매년도의 정기총회에서 일정수의 임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종료일 전에 만료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료일까지로 임기를 연장한다.

제 26 조 (회장)

- 1) 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
- 2)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 회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27 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법인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 28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현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법인의 재산현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일

제 29 조 (임원의 보선)

- 1)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정기총회까지 보선을 연기할 수 있다.
- 2) 보선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0 조 (임원의 선관의무)

이 법인의 임원은 관련 법령과 이 법인의 정관, 규정 및 방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또는 스스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장 사 무 조 직

제 31 조 (사무조직의 설치)

이 법인의 정관상의 업무수행과 법인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향후 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사무조직을 둔다.

제 32 조 (사무조직의 구성)

사무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 7 장 재 산 및 회 계

제 33 조 (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가입비, 회비, 자격인증비(라이선스비), 자격시험응시료, 교육훈련 참가비, 기부금, 후원회비,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 34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5 조 (예산과 결산)

- 1)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에 부족이 발생하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과 함께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첨부된 결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6 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관련 법규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관습에 의한다.

제 37 조 (재산목록 등)

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의 최소 7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2. 사업계획 및 예산서
3. 재산목록
4. 재무상태표
5. 손익계산서

제 8 장 보 칙

제 38 조 (정관변경)

- 1) 정관의 변경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결의한다.
- 2) 제1항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39 조 (해산)

이 법인은 총회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다만, 해산결의는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40 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정회원 전원으로 한다.

제 41 조 (잔여재산의 처분)

이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 및 처분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잔여재산의 처분결의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을 설립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규정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안은 개정일 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안은 개정일 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